

제1차의회운영위원회
2014. 11. 24.(월)10:30

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의회 운영 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이홍신

「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」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윤흥창 의원 외 6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4년 9월 30일
-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3. 제정이유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,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,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~제7조)
- 이권 개입의 금지 등 의원의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~제12조)
- 국내·외 활동 제한, 외부강의·회의 신고,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도의회 풍토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3조~제18조)

-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,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9조~제20조)
-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1조~제33조)

5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」은 대통령령인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23조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이 준수해야할 세부적인 행동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.
-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치단체에 시달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,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조항은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음.
- 따라서 위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과 행동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됨.